

#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기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52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1. 18.

발의자 : 이기환 의원 외 6명

## 1. 제정이유

-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식사 공급을 통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에 대한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계획수립 규정(안 제3조)
- 운영방법과 운영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위생지도 및 지원, 예산지원, 보조금 환수에 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## 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2

## 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

## 6.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## 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(부서 검토의견)

## 【붙임 1】

###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경로식당"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.
2. "운영자"란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(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종교단체 등)로 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.
3. "종사자"라 함은 경로식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(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

**제3조(계획수립)**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자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운영)** 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한다. 다만, 혹한기,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경로식당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)으로 한다.

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.

**제5조(운영자의 책무)** ①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, 철저한 위생관리, 식품 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**제6조(위생지도 및 지원)**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도,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**제7조(예산지원)** ① 시장은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(급식인원수, 급식횟수)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**제8조(보조금의 환수)** 시장은 제7조에 따라서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.

1.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3.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
5.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이기환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6)

#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529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7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

## □ 수정이유

- 안산시가 경로식당을 적영·위탁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명을 수정하고,
- 일부 경로식당에 실비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관련 조문을 수정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제명을 “안산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으로 수정
- 지원대상은 “60세 이상 노인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)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”로 수정 (안 제4조제2항)
- “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”를 신설 (안 제4조제4항)
- “급식인원수”를 “전체 급식인원수, 저소득 급식인원수”로 수정 (안 제7조)

##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 을 “안산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 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경로식당” 을 “노인무료 경로식당” 으로, “60세 이상 노인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)으로 한다” 를 “60세 이상 노인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)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급식인원수” 를 “전체 급식인원수, 저소득 급식인원수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u>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</u>	<u>안산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</u>
<b>제4조(운영) ① (생 략)</b>	<b>제4조(운영) ① (원안과 같음)</b>
② <u>경로식당</u>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<u>60세 이상 노인</u> (「국민기초 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)으로 한다.	② <u>노인무료 경로식당</u>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<u>60세 이상 노인</u> 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)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.
③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③ (원안과 같음) ④ <u>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.</u>
<b>제7조(예산지원) ①</b> 시장은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( <u>급식인원수</u> , 급식횟수)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<b>제7조(예산지원) ①</b> 시장은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( <u>전체 급식인원수, 저소득 급식인원수</u> , 급식횟수)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원안과 같음)